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 318 호 2015. 1. 7. (수)

조 례

제1027호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 1567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

1. 폐지이유

201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(안전행정부)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향후 상환재원으로 기금 또는 별도 회계 등에 적립하거나 채무상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회계에 직접 상환액을 편성하여 집행하여도 지방채상환기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,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.

제181회 김해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김 해 시 장 김 맹 곤

2015년 1월 7일

김해시 조례 제1027호

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

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.